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899
----------	-----

제출연월일 : 2008. 9. 10.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過誤納”을 “과오급(過誤給)”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併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하다”를 “피하다”로, “통지하다”를 “알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

성함.

-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배치함.
- (3) 자연스럽게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10조 및 제14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①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해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 및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u>강제동원되어</u>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u>지원하고</u>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u>기하고</u>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u>기여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u>강제로 동원되어</u>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u>지원하고</u>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u>피하고</u>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u>이</u>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 은 다음과 같다.			
1. “ <u>일본군위안부 피해자</u> ” 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u>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u>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1. “ <u>일본군위안부 피해자</u> ”란 일제에 의하여 <u>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u>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 <u>생활안정지원대상자</u> ” 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u>제3조의</u> 규정에 따라 등록된 <u>자</u> 를 말한다.	2. “ <u>생활안정지원대상자</u> ”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u>제3조에</u> 따라 등록된 <u>사람</u> 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3條(決定 및 登錄) ① 생활안정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第2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登錄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第4條(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各號의 지원을 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3. 生活安定支援金の 지급
4. 간병인 지원

②第1項의 지원을 행함에 있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各號의 지원을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條(賃貸住宅의 優先賃貸)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韓住宅公社法에 의한 大韓住宅公社は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建設하는 賃貸住宅을 賃貸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住宅을 所有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賃貸하여야 한다.

第6條(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協調要請) 審議委員會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審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申請人本人, 證人 또는 參考人으로부터 證言 또는 陳述을 聽取하거나,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第8條(權利의 보호) 이 法에 의한 生活安定支援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으며, 押留할 수 없다.

第9條(生活安定支援金の 還收)
① 여성부장관은 이 法에 의하여 生活安定支援金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生活安定支援金の 전부 또는 일부를 還收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生活安定支援金の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①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生活安定支援금을 지급받은 경우

2. 過誤給된 경우

② 여성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 生活安定支援金을 반환할 者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해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

구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적회복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적회복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대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4條(權限의 위임·委託)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의 權限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委託하거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